

2026학년도

글로벌정주지원센터
「STEP-UP JOB & INTERN FAIR」
용역 과업지시서



명 지 대 학 교

「STEP-UP JOB & INTERN FAIR」

용역 과업지시서

1. 사업개요

- 가. 사업명 : 명지대학교 앵커사업단 외국인 유학생 취업박람회 및
인턴십 프로그램 위탁 운영
- 나. 사업기간 : 계약일 ~ 2027. 1. 29.(금)
- 다. 행사명: 2026년 명지대학교 「STEP-UP JOB & INTERN FAIR」
- 라. 주최기관: 명지대학교 앵커사업단
- 마. 운영기관: (주)한국취업센터
- 바. 과업대상: 명지대학교 자연캠퍼스 외국인 유학생

2. 사업목적 및 필요성

가. 사업목적

- 1) 외국인 유학생과 기업 간 직접적인 취업·채용 기회 확대
- 2) 취업박람회부터 인턴십 및 취업연계까지 단계적 지원체계 마련
- 3) 인턴십을 통한 실무경험 및 직장 적응 지원으로 안정적인 국
내 취업·정착 도모

나. 사업 필요성

- 1)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취업 및 지역 정착을 위해 단순 취업정
보 제공을 넘어 기업 발굴, 상담·매칭, 직무경험 및 후속 취
업연계가 가능한 실질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 필요

3. 과업수행

가. 주요 과업

- 1) 사업 세부 운영계획 및 추진체계 수립
- 2) 외국인 유학생 채용 및 인턴십 수요기업 발굴·관리
- 3) 취업박람회 참여기업 및 외국인 유학생 모집·관리
- 4) 기업별 채용직무와 학생의 전공·희망직무 등을 고려한 기업-학생 매칭
- 5) 취업박람회 기획 및 현장 운영, 취업·직무 및 기업별 채용상담 운영
- 6) 인턴십 참여학생 선발·배치 및 사전 직무교육, 시간제취업 관련 행정서류 준비 지원
- 7) 인턴십 기간 중 참여학생 및 기업 관리와 근태·직무수행·적응도 등 모니터링
- 8) 인턴십 종료 후 기업·학생 평가 및 후속 면접·채용 연계
- 9) 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관리, 결과보고서 작성·제출

나. 취업박람회 운영

- 1) 일정: 2026.11.5.(목) 11:00~17:00
- 2) 장소: 명지대학교 자연캠퍼스 명진당 앞 자유로
- 3) 목표: 외국인 유학생 300명 이상, 참여기업 10개사 이상
- 4) 기업별 채용상담 및 직무상담을 운영하고, 행사 이후 인턴십 및 채용으로 연계 가능한 기업과 학생을 지속 관리

다. 인턴십 운영

- 1) 기간: 2026.12.21.(월)~2027.1.15.(금)
- 2) 목표: 참여학생 3명, 참여기업 3개사 이상
- 3) 참여학생 대상 사전 직무교육 및 기업 배치를 실시하고, 인턴십 기간 중 근태 및 직무수행 현황을 관리
- 4) 인턴십 종료 후 기업·학생 상호평가를 실시하고 후속 면접 및 채용 연계를 추진

라. 사업 추진 목표

구분						
취업박람회 참여 외국인 유학생	취업박람회 참여기업	현장 취업 및 직무 상담	인턴십 참여 외국인 유학생	인턴십 참여기업	후속 취업 및 채용 연계	참여자 만족도
300명 이상	10개사 이상	20건 이상	3명	3개사 이상	3건 이상	4.7/5.0 이상

4. 일반사항

가. 과업수행

- 1) 과업수행자는 사업 수행 중 취득한 기업 및 학생 관련 자료와 개인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, 관련 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준수
- 2)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 과정에서 발주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, 발주기관의 요청 및 검토사항을 반영
- 3) 사업 추진 중 일정 및 주요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

나. 착수 및 보고

- 1)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세부 수행계획서, 추진일정 및 투입인력 계획 등 착수에 필요한 서류 제출
- 2)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 추진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며, 사업 종료 시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

다. 결과물

- 1) 최종 결과보고서
- 2) 취업박람회 참여기업·학생 및 상담·매칭 실적자료
- 3) 인턴십 참여기업·학생 관리 및 운영자료
- 4) 만족도 조사 및 성과자료

- 5) 행사 및 인턴십 운영 증빙자료
- 6)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업 관련 자료

라. 기타사항

- 1)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
- 2) 과업수행자는 사업 수행 결과에 대한 관리 및 결과물의 정확성에 책임을 지며,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

5. 계약의 해지

- 가. 업체가 제출하는 일일보고서 등 제출서류를 허위기재하여 보고, 방역소독방법 (기준)을 위반하여 실시 한 경우 본 용역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
- 나. 용역업체가 방역소독을 위한 약품 등을 타 용도로 사용할 시에는 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본 용역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